

##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2 ~ 8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	2012. 11. 19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개정이유

○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변경함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(1) 법 제2조제4호 ⇒ 제2조제6호

(2) 법 제108조 ⇒ 제126조

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

(1) ~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른      (2) 당해 ⇒ 해당

(3)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    (4) 자 ⇒ 사람

(5) 지역안, 범위안 ⇒ 지역, 범위    (6) 인 ⇒ 명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, 제126조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   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2. 9.10. ~ 9.3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6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·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”를 “법 제126조에 따라 군이”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2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의원”을 “대의원회”로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인과 2인”을 “1명과 2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자치단체 등”을 “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·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군”으로 “1월”을 “1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3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“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장”을 “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·함양지사장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규약”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.</p> <p>3. “수혜지역”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한다)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기반시설관리) ① 군수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 뜻은-----  1. -----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6호에 따른 -----  2. -----이란-----  3. -----이란-----</p> <p>제3조(기반시설관리) ① -----법 제126조에 따라 군이-----  -----  --해당-----  --  ② -----에 따른-----  -----  해당-----  -----</p> <p>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 법 제126조에 따라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② -----각 호----- 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</li> <li>2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</li> </ol>	<p>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명-----</li> <li>2. -----</li> </ol>
<p>제5조(수리계의 등록)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.</p>	<p>제5조(수리계의 등록) ----- 에 따른-----경우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규약의 기재사항)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8. (생략)</li> <li>② (생략)</li> </ol>	<p>제6조(규약의 기재사항) ① ----- -----각호----- 1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수리계원의 자격)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(생략)</li> </ol>	<p>제7조(수리계원의 자격) ----- -----각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총회) ①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. 다만,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총회 및 <u>대의원</u>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총회) ① ----- -----필요한----- -----명----- ----- ② -----대의원회-----필요한----- -----</p>
<p>제9조(임원)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,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임원) ① ----- 1명과 2명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수리계의 임무)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·보수 등에 대하</li> </ol>	<p>제10조(수리계의 임무) ① ----- -----각호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<b>제13조(예산 및 회계)</b>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<u>지방자치단체</u>의 회계연도에 따르고,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<u>1월</u>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<u>3월</u>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3조(예산 및 회계)</b> ① ----- -----<u>군</u>----- ----- -----<u>1개월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에 따른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u>3개월</u>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14조(서류의 비치)</b> 수리계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,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</li> <li>규약, 수리계원의 명부 및 <u>기타</u> 규약에서 정한 서류</li> </ol>	<p><b>제14조(서류의 비치)</b> -----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2.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
<p><b>제15조(수리계의 해산)</b> ① 수리계는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해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<u>때</u></li> <li>수해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<u>규정에 의한</u> 기준에 미달된 <u>때</u></li> <li>천재·지변 <u>기타</u>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·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<u>때</u></li> </ol> <p>② 제1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<u>당해</u> 기반시설과 제14조 <u>각호</u>의 서류를 다음 <u>각호</u>에 해당하는 <u>자</u>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<u>농업기반공사</u> <u>거창지사장</u></li> <li>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</li> </ol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5조(수리계의 해산)</b> ①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<u>경우</u>----- ----- ----- <u>에 따른</u>-----<u>경우</u> 3.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u>경우</u> ② -----<u>에 따라</u>----- -----<u>해당</u>-----<u>각 호</u> -----<u>각 호</u>-----<u>사람</u>----- ----- 1. -----<u>한국농어촌공사</u> <u>경남지역본부 거창·함양지사장</u> 2.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